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4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 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타 유사시설 대비 높은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라. 그 밖에 기존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다. 개인연습사용료의 반환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에 미세먼지 포함을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 라. 시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신설함(안 별표 2)
- 마.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워밍업실의 사용료 및 서남권 돐구장 내 풋살구장, 불펜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 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2~3)
- 바.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현행화함(안 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액한다”를 “감액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0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제1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천재지변”을 “천재지변 (미세먼지를 포함한다)”으로, “경기”를 “개인연습, 경기”로,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중 풋살구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풋살구장	잠실풋살구장, 목동다목적구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서남권 돔구장 풋살구장	4,000~8,000
------	--	-------------

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시설	종 별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공동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	1인 1회당	1,000 ~20,000	재료비 포함

※ 전용사용, 개인연습사용 및 생활체육교실 등 사용료 또는 수강료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10)
	육상연습장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럭비, 각종행사	
	실내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제1수영장	수영	
	제2수영장	수영	
	체조관	생활체육교실 운영	
	야구장	야구	
	인라인하키장	인라인하키,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서울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성산동 515)
	보조경기장	축구, 각종행사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다목적구장	축구, 각종행사	
	위명업실	축구, 각종행사	
	2002FIFA월드컵기념관	2002FIFA월드컵 및 축구 관련 전시	
서남권돔구장	야구장	야구, 각종행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30 (고척동 63-6 외 13필지)
	수영장	수영	
	축구장	축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풋살구장	풋살, 각종행사	
	보행광장	각종행사	

명칭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각종행사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1동 914)
	야구장	야구	
	실내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하키	
	다목적구장	풋살, 연식야구, 소프트볼	
효창 운동장	축구장	축구, 필드하키 및 육상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177-15 (효창동 3)
장충 체육관	주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1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다목적실1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다목적실2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뚝섬승마 훈련원	승마훈련원	승마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 (성수동1가 685-6)
구의 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광진구 위커히로 57-30 (구의동 164-5)
신월 야구공원	간이야구장	야구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4길 26 (신월동 149-20)
창동 운동장	축구장	축구, 하키, 테니스, 게이트볼 등	서울시 도봉구 자운길 66 (창동 1-6)
	배드민턴장	배드민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수영, 각종경기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실내체육관	농구, 탁구, 합기도, 각종 경기 및 행사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제1·2 수영장	09:00~18:00	780,000~1,014,000	1,170,000~1,521,000	1,500,000~1,950,000	
		09:00~12:00	260,000~338,000	390,000~507,000	500,000~650,000	
		12:00~18:00	660,000~858,000	990,000~1,287,000	1,300,000~1,690,000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올림픽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116,000~1,450,8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체조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0,000~52,000				
풋살구장(2시간)	30,000~39,000					
서울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020,000~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다목적구장(2시간)	63,000~81,900				
	워밍업실(1면, 2시간)	57,000~74,1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715,000~929,500				
	VIP룸 (")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테크,광장(4시간, m²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113,800	
A2		77,800 ~101,100				
A3		63,400 ~82,400				
A4		61,800 ~80,300				
A5		45,600 ~59,200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서남권 돔구장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수영장	09:00~18:00	468,000~608,400	702,000~912,600	900,000~1,170,000	
		09:00~12:00	156,000~202,800	234,000~304,200	300,000~390,000	
		12:00~18:00	396,000~514,800	594,000~772,200	780,000~1,014,000	
	보행광장(4시간, m²당)		200~26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볼펜(2시간)		88,000 (야구경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목동 운동장	주경기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야구장	1일	100,000~130,000	150,000~195,000	418,000~543,400	
		3시간	60,000~78,000	90,000~117,000		
	실내빙상장		77,000~100,100 (1시간)	115,500~150,150 (1시간)	5,500,000~7,150,000	110,000~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30,000~39,000(1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다목적실	18,500~24,000	27,800~36,100	60,600~78,8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구의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신월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창동 운동장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배드민턴장 (4시간, 14면)		180,000~234,000			
	실내체육관(3시간)		165,000~214,500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2. 1일 기준 대관시에는 사용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시간당, 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조기, 야간은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고, 3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때에는 초과시간대의 전용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풋살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시간이 야간인 때에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한다. 또한 인조잔디구장의 시간대관시 사용시간 1시간 초과하는 경우 축구장은 2시간 사용료의 2분의 1, 야구장은 3시간 사용료의 3분의 1을 가산한다. 3. 잠실종합운동장 내 수영장의 다이빙장에 대한 전용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보조다이빙장에 대한 사용료는 수영장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 4. 천연잔디구장의 전용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추가하여 징수한다. 5.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30분 단위로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되, 이 경우 전용사용료는 시간당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시설 내 집기 대여료와 데크·광장 및 그 밖에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공용시설에 대한 전용사용료의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7.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관하지 않고 회원실만을 대관하는 경우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8. 목동실내빙상장에서 일반행사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기타 사용란에 명시된 금액을 징수한다.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10. 창동배드민턴장 전용사용료는 별표 2의 제1호 개인연습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이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p> <p>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u>감액한다</u>.</p> <p>1. 2.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 <u>감액할 수 있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p> <p>가. ~ 라. (생 략)</p> <p><u><신 설></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p> <p>1. -----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개인연습사용료를 결제하</u></p>

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 마. (생략)

<신설>

3.·4. (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③ (생략)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⑤ (생략)

는 자 :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가목부터 라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개인연습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자 :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3.·4.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 개인연습, 경기 ----- 별표 2-----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 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입장료는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5% 범위에서 감액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안 부칙 제2조)
- 또한, ‘개인연습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립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개인연습사용료를 반환함으로써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 사용료 인하에 따라 재정수입의 감소 발생(안 별표 3)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1항 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 금번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액은 5년동안 108,723천원으로, 연평균 21,745천원임
- 비용추계 전제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할 시 비용(세입감소) 발생
 - 체육시설을 이용 시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로 결제하는 경우 체육시설 입장료를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를 10% 범위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를 5% 범위에서 감액하고자 하나 현재로서는 시설 이용 시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로 결제하는 경우에 대한 통계가 없으므로,

현재 시립체육시설 카드사용자의 10%가 제로페이로 전환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추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립체육시설 운영 중단 시 개인연습사용자에 대한 반환은 최근 3년간 일평균 개인연습사용료 수입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시립체육시설 운영 중단 일수를 활용하여 비용추계
- 월드컵경기장 연회장 사용료 인하에 따른 수입감소액은 최근 3년 평균 연회장 사용료 수익을 활용하여 비용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합계) ≙ △108,723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계(a)	△32,347	△19,094	△19,094	△19,094	△19,094	△108,723
	1)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	△13,253	-	-	-	-	△13,253
	2) 개인연습사용료 반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	△3,629	△3,629	△3,629	△3,629	△3,629	△18,145
	3) 전용사용료 수입 감소	△15,465	△15,465	△15,465	△15,465	△15,465	△77,325
세출	소계(b)	-	-	-	-	-	
□ 총 비용(a-b)		△32,347	△19,094	△19,094	△19,094	△19,094	△108,723

1) 제로페이 결제시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액 : 13,253,000원

※ 한시적 감면 규정('19.12.31까지)으로 8개월분('19.5~12월) 추계

○ 추정식 : [입장료 연 카드사용액(36백만원) × 감면율(30%) + 개인연습 사용료 연 카드 사용액(928백만원) × 감면율(10%) +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연 카드 사용액(1,904백만원) × 감면율(5%)] × 제로페이 전환비율(10%) × 8월/12월

(참고)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및 카드 이용 비율(2018)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용료 합계(A)	카드사용(B)	카드 외 사용(C)	카드사용 비율 (B/A)	카드외 사용 금액 비율(C/A)
계	3,255	2,868	387	88.1%	11.9%
입장료 수입	39	36	3	92.3%	7.7%
개인연습사용료 수입	928	928	-	100.0%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2,288	1,904	384	83.2%	16.8%

2) 연간 개인연습 사용료 반환 시행에 따른 수입 감소액 : 3,628,917원

○ 추정식 : 연간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영중단 일수(47일) × 연평균 1일 개인연습사용료 수입(77,211원) = 3,628,917원

구 분	개인연습사용료(a)	일평균 개인연습사용료(a/365일)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영 중단일수*
2015	26,957,350원	73,856원	59일
2016	29,855,010원	81,795원	55일
2017	27,733,920원	75,983원	28일
연평균	28,182,093원	77,211원	47일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영중단 일수 : 서울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 중단일수 기준

3) 연간 월드컵경기장 연회장 사용료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액 : 15,464,634원

○ 추정식 : 연평균 연회장 사용료 수입(51,038,397원) × 사용료 인하율 (30.3%) = 15,464,634원

구 분	2016	2017	2018	연평균
연회장 사용료 수입	51,658,590	17,038,160	84,418,440	51,038,397

※ 연회장 사용료 인하율 : 30.3%

(현행) 1,025,400원 ~ 1,333,000원 → (개정) 715,000원 ~ 929,500원

※ 연회장 사용료 인하에 따른 시설 이용 활성화시 오히려 수입 증가 가능성이 있음

4. 작성자 :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 김미영(2133-2682)